

Newsletter

May, 2021



ICR



목 차

1. 의료기기 최신 규격 현황
2.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효율 관리 기자재 개정
3.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4. 이동통신 무선설비의 시험주파수 선정 세부 방법 변경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



의료기기 최신 규격 현황



■ IECCE에서 의료기기 관련 규격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 업데이트 된 규격은 보조 규격 1개와 Prerelease version 2개 입니다.

(신규 규격 현황)

규격 번호	날짜	규격명	상태
IEC 60601-1-3 ed2.2	2021-01	진단용 X선기기 방사선 방어	Published
IEC 60601-2-63 ed1.2	-	치과용 구강외 X선기기	Prerelease
IEC 60601-2-65 ed1.2	-	치과용 구강내 X선기기	Prerelease

☎ 문의처

전기안전평가센터 / 김 영 빈 전임연구원
T.010-5522-2974 / kyb@icrqa.com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효율관리 기자재 개정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 고시번호 : 제 2021-68호
- 시행 일자 2021. 04. 20

▶ 주요 내용

- 고효율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건축용 기자재로 이관
- 스마트 LED 조명시스템 범위 확대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비 대면 공장심사 규정 신설
- 시험기관 관리효율화를 위한 근거규정 신설
- 인용규격 및 용어 KS와 부합화

■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

- 고시번호 : 2021-69호
- 시행일자 2021. 04. 20

▶ 주요내용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고시 개정사항 반영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 세부내용

(1)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2품목(고기밀성 단열문, 냉방용 창유리 필름) 건축용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

(2) 스마트 LED 조명시스템 신설

스마트 LED 램프, 스마트 LED 등기구, 스마트 LED
조명제어시스템으로 세분화되며, 각각의 시험 항목이 추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No	고효율 시험 항목		스마트 LED 램프		스마트 LED 등기구	
			#1	#2	#1	#2
1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		○	
2	역률	기준역률	○		○	
		최소역률	○		○	
3	고조파전류		○		○	
4	대기전력		○		○	
5	상관색온도		○	○	○	○
6	연색지수	Ra	○	○	○	○
		R9	○	○	○	○
7	기준광속		○	○	○	○
8	기준 광효율		○	○	○	○
9	광학적플리커		○		○	
10	조광특성	최소광효율	○		○	
		소음	○		○	
11	광속유지율			○		○
12	상관색온도 제어	최소상관색온도		○		○
		최대상관색온도		○		○
		광속변화율		○		○
13	표시사항		○	○	○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3) 스마트 LED 조명제어시스템

No	고효율 시험 항목		1세트
1	재실감지 또는 사물 감지		○
2	조도감지		○
3	최대광속설정	연속조광	○
		최대광속 설정	○
		사전설정	○
4	시간대제어		○
5	구역설정	개별제어	○
		그룹제어	○
6	대체제어		○
7	사용자인터페이스		○
8	에너지모니터링		○
9	원격진단		○
10	사이버보안 (선택)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4) 인용규격 및 용어 개정 KS 부합화

(18) 등기구 용어 "전류 고조파 함유율" 용어가
"고조파전류"로 시험 항목명 변경

(5)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비대면 공장심사 근거 규정 신설**

감염병 등의 사유로 현장방문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
공장심사 추진

(6) **시험기관 관리 효율화를 위한 근거 규정 신설**

시험기관의 실험설비와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운영실적
보고서 제출

▶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 세부 내용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고시 개정사항 반영** (스마트 LED조명 관련)
동 조항은 기존 LED조명인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관한
것으로, 신기술인 스마트 LED램프는 개정되는 고효율고시를
적용토록 명확화 (제외항목 신설)

☎ 문의처

전기안전평가센터 / 양 영 준 전임연구원
T.010-5522-3613 / yangyj@icrqa.com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적합성평가의 신뢰성 제고와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였습니다.

■ 2021년 4월 8일부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운용요령이 시행되었습니다.

■ 아래와 같이 운용요령 제정안 행정 예고가 실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 공고번호

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56호(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 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 요령)
2.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062호(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 요령)

■ 법령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문의처

시스템인증본부 / 김 채 린 주임연구원
T.02-6351-9001 / kcl@icrqa.com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허위성적서 발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시험인증 신뢰성 강화한다

- 시험인증 부정행위 차단하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월8일 시행 -
- 시험인증 서비스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지원 근거도 법률에 담아 -

▣ 앞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허위 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적합성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으로, 현재 국내에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인증 기관은 3,900여 개에 달한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허위성적서 발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시험인증 신뢰성 강화한다

- 시험인증 부정행위 차단하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월8일 시행 -
- 시험인증 서비스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지원 근거도 법률에 담아 -

- 이중, 900여개의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시험 역량을 평가해 인정하는 **공인기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부정행위를 적발하여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국한된 조치**가 전부였고,
- 그 외, 3,000여개의 시험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적발하여도 형법상 처벌 외에 **부정성적서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 국표원은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인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을 평가하여 보증하는 공인기관 인정제도를 운영 중

* 출처 : 2021. 04. 0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이에, 공인기관 뿐 아니라 **전체 시험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법률인 「적합성평가관리법」이 '20년 4월 7일
제정됐으며, 하위법령과 제반 규정을 제정하는 등 1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적합성평가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토록 하였다.
- 아울러, 성적서 위·변조 의혹이 제기된 기관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조사토록 하고, 조사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모든 시험인증기관에 평가결과, 성적서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규정하였다.
- 둘째, 공인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공인기관 인정 절차, 자격 취소 정지 등 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더불어, 공인기관의 자격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험인증기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 공인기관 자격정지에 해당하나, 시험기관 이용자의 업무불편을 유발하는 경우 해당 처분 대신 과징금(5억원 이하) 부과 제도 도입. 단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만 적용

○ 셋째, 시험인증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법률에 포함하였다.

* 출처 : 2021. 04. 0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문의처

전파시험센터/ 박 종 민 책임연구원
T.070-5083-2664 / kaelu@icrqa.com

이동통신 무선설비의 시험주파수 선정 세부 방법 변경



▣ 변경 방법

- ▶ (KSX3123 5.7c)에 "일정 주파수 대역을 구비한 경우에는 당해 주파수대의 상한, 하한 및 중간에 지정될 수 있는 주파수에 대하여 각각 시험한다"라고 시험주파수 선정에 대한 일반적인 공통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조건으로 피시험기기의 채널 대역폭 대비 시험주파수 대역폭이 충분히 넓은 경우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부속서 L의 전계강도 및 자계강도 무선기기 시험방법 (L.2.3.b)에 "무선기기의 사용주파수대역에 따라 시험선택 주파수가 달라지며, 만일 사용주파수대역이 중심주파수의 $\pm 10\%$ 이상이면 처음, 중간, 마지막 주파수를 선택하여 시험하고 $\pm 10\%$ 이내이면 처음과 마지막 주파수를 선택하여 시험한다. 그 외 단일주파수는 해당 주파수에서 시험을 한다"라고 해당 기자재의 세부 시험 주파수 선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위 사례에서와 같이 기자재별 적절한 시험주파수 선정에 대한 세부 가이드선 제시가 필요함.

이동통신 무선설비의 시험주파수 선정 세부 방법 변경



■ 검토 내용

- ▶ 무선시험은 일정 주파수 대역내의 출력, 주파수허용편차 등 인밴드 특성과 대역외 발사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시험 채널이 아닌 꼭 필요한 몇개의 시험 채널들을 Sampling 하여 시험이 이루어진다.
- ▶ 일반적으로 시험주파수 대역이 넓은 경우 최저, 중간, 최고 등 3개의 시험 주파수를 선정하여 인밴드 특성 및 대역외 발사등의 평가가 필요하나 시험주파수 대역이 좁을 경우에는 중첩된 신호(채널)를 반복하여 측정하는 경우가 발생.

■ 검토 결과

- ▶ 상기의 검토 내용 및 2월 26일 이동통신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연구반의 검토 결과에 따라 최저, 최고 시험 주파수가 연접(연속해서 인접)되거나 서로 중첩될 경우 중간 시험채널은 생략 가능한 것으로 검토 및 협의 되었음.

이동통신 무선설비의 시험주파수 선정 세부 방법 변경



- ▶ 따라서 무선설비 시험방법의 혼선 방지와 시험 간소화를
위해 무선설비 송·수신 저/중/고 시험채널 중 저/고 채널이
중첩/연접될 경우 중간 채널 시험 생략

<기술협의회-무선-21-01 기술검토서 (2021-03-02)>

문의처
전파시험센터 / 이 홍 규 전임연구원
T.010-5522-2943 / hkleee@icrqa.com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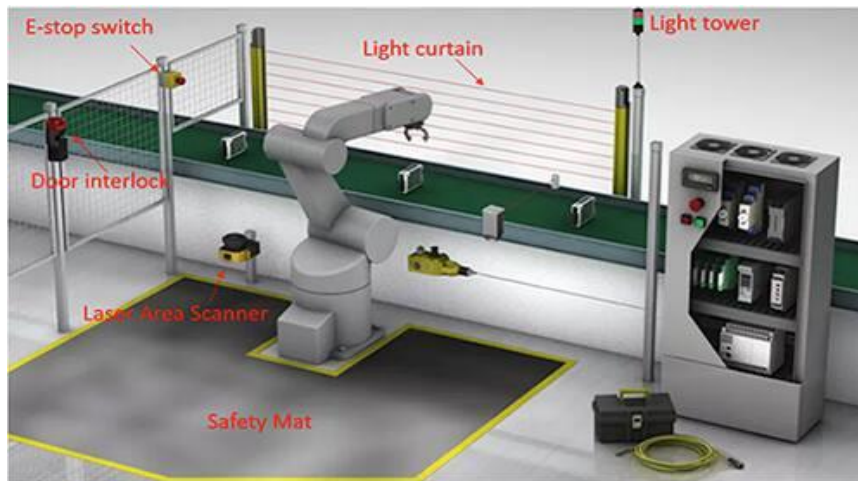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2021년 03월 11일자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와 방호 장치의 자율안전기준 고시가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등의 적용범위 규정
-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에 대한 형식의 구분과 동일형식 범위 규정



(출처: <https://www.digikey.kr/en/articles/reducing-robot-risk-how-to-design-a-safe-industrial-environmen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변경 사항

- 2019년 12월 24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안전매트에 대한 정의 및 자율안전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변경 사항

- 산업용 로봇 방호 장치를 기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안전인증 대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산업용 로봇 방호 장치의 형식의 구분과 동일 형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식의 구분	동일형식 범위
1. 종류(안전매트, 광전자식 방호장치) 및 분류 2. 안전매트 구조(제어부, 감지기) 3. 광전자식 방호장치 구조(제어부, 4. 투광부, 수광부, 출력신호개폐장치) 및 검출 성능	1. 전원의 종류(직류/교류) 2. 안전매트 구조가 동일하면서 감지기 의 동일 면적에서 형태가 다른 경우 3. 광전자식 방호장치 구조와 검출 성능 이 동일하면서 광축수가 다른 경우

- ❖ 상기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산업안전센터 / 양 대 송 선임연구원
T.010-5522-4529 / yds@icrqa.com



www.icrqa.com

ICRO-31/R20161125 본 문서는 법률 제 14088호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며, ICR의 지적 자산으로 불법 편집 및 복사를 금합니다.

Address :3611, Hagun-ri, Yangchon-eup, Gimpo-si,
Gyeonggi-do , South Korea (10048)

Company Id No : 110111-243147
Tax & VAT Id No : 105-86-35114

Tel : (+82)2-6351-9001~5 / Fax : (+82)2-6351-9007
Home page : www.icrqa.com



www.icrqa.com

ICRO-31/R20161125 본 문서는 법률 제 14088호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며, ICR의 지적 자산으로 불법 편집 및 복사를 금합니다.

Address :3611, Hagun-ri, Yangchon-eup, Gimpo-si,
Gyeonggi-do , South Korea (10048)

Company Id No : 110111-243147
Tax & VAT Id No : 105-86-35114

Tel : (+82)2-6351-9001~5 / Fax : (+82)2-6351-9007
Home page : www.icrqa.com